고양 장항 아테라(장항지구 B-3BL)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303-574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발표일 (2024.08.13.)로부터 3년간 적용	5년	적용	공공택지(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0.02.(금)	2026.10.07.(수)	2026.10.08.(목)	2026.10.14.(수)	2026.10.16.(금)	2026.10.21.(수)

1 공통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 장항 아테라는 분양 완료 이후 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금회 청약 대상 세대 관람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O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 주택형별 세대수의 **9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rteragy.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02.(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38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25.(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351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반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0.07.(수)	2026.10.08.(목)	2026.10.14.(수)	2026.10.16.(금)	2026.10.21.(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금호건설 수도권 영업소(10:00 ~ 16:00)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B동 412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고양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연대하여 균등 부담하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중 **계약자 부담(50%) 75,000원**

- 수입인지 구입 후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발표일(2024.08.13.)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주택과-**39768(2026.09.28.)호**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29-2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760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6세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세대, 일반공급 2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6930038	01	084.9958A	84A	84.9958	24.3167	109.3125	51.6380	160.9505	53.0747	4	3	1
	02	084.9478B	84B	84.9478	25.0220	109.9698	51.6088	161.5786	53.0447	2	1	1
	합 계									**6**	**4**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표기	동호수	분양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추가 부대경비	계	계약시	2026.11.19.	입주지정일
84A	302동 1503호	331,012,307	332,017,693	-	663,030,000	132,606,000	397,818,000	132,606,000
	304동 101호	331,012,307	265,707,693	-	596,720,000	119,344,000	358,032,000	119,344,000
	304동 605호	331,012,307	318,757,693	-	649,770,000	129,954,000	389,862,000	129,954,000
	305동 904호	331,012,307	318,757,693	-	649,770,000	129,954,000	389,862,000	129,954,000
84B	301동 504호	330,825,373	316,314,627	-	647,140,000	129,428,000	388,284,000	129,428,000
	304동 1204호	330,825,373	329,514,627	-	660,340,000	132,068,000	396,204,000	132,068,000

※ 상기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은 금회 공급분에 대한 안내이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1~5회차 납부일자가 도과하여 중도금은 6회차에 포함해 납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공급세대는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마이너스옵션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금액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기존 내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개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금융기관의 알선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중도금 대출 및 기타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금액(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 : 원/VAT포함]

구분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11.19.	입주지정일
발코니 확장 금액	84A	5,160,000	516,000	516,000	4,128,000
	84B	4,580,000	458,000	458,000	3,664,000

■ 추가 선택품목(유·무상옵션) 세부 내역 및 금액(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 : 원/VAT포함]

동호수	품목	설치위치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11.19.	입주지정일
301동 504호	조명패키지	거실조명(우물천장 직간접라인조명 2줄, 아트월 단천장+간접조명)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팬트리 시스템선반	현관창고+복도 팬트리 : 시스템선반	700,000	70,000	70,000	560,000
	냉장고장(가전 미포함)_선택3	통합형 냉장고 공간+서랍형 수납장+상부수납장3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바닥마감재_선택2	전실 광폭 강마루	600,000	60,000	60,000	480,000
	거실패키지	① 거실(아트월) 세라믹타일(화이트) ② 주방 시트판넬, 복도 시트판넬/가구판넬 ③ 복도1면, 소파뒷벽 천장 픽쳐레일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합 계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302동 1503호	시스템 에어컨_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냉장고+김치냉장고	LG 전자 Objet(4+3도어) (냉장/냉동4+김치3)	8,400,000	840,000	840,000	6,720,000
	거실패키지	① 거실(아트월) 세라믹타일(화이트) ② 주방 시트판넬, 복도 시트판넬/가구판넬 ③ 복도1면, 소파뒷벽 천장 픽쳐레일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CDD-600B(코스텔)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바닥마감재_선택2	전실 광폭 강마루	600,000	60,000	60,000	480,000
	욕실1 패키지(공용)	① 욕실벽, 욕조에이프런 : 포세린타일(600*600) ② 수납형 욕조수전 ③ 수전/악세서리 무광 니켈 마감, 비데일체형 양변기 ④ 복합환풍기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욕실1 패키지(부부)	① 욕실벽 : 포세린타일(600*600) ② 샤워부스 흑니켈프레임, 캔버스 샤워수전 ③ 수전/악세서리 무광 니켈 마감, 비데일체형 양변기 ④ 복합환풍기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전기오븐	NQ50T8539BK(삼성전자)	800,000	80,000	80,000	640,000
	전기쿡탑(인덕션3_블랙)	CIRS-FL301FB-S(쿠쿠)	500,000	50,000	50,000	400,000
	조명패키지	거실조명(우물천장 직간접라인조명 2줄, 아트월 단천장+간접조명)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주방패키지_선택1	① 주방 상판/벽 마감재 : 엔지니어드스톤 ② 유리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포함) ③ 주방상판 하부 LED라인조명 ④ 독립형 후드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합계		35,600,000	3,560,000	3,560,000	28,480,000

동호수	품목	설치위치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11.19.	입주지정일
304동 101호	시스템 에어컨_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냉장고+김치냉장고	LG 전자 Objet(4+3도어) (냉장/냉동4+김치3)	8,400,000	840,000	840,000	6,720,000
	거실패키지	① 거실(아트월) 세라믹타일(그레이) ② 주방 시트판넬, 복도 시트판넬/가구판넬 ③ 복도1면, 소파뒷벽 천장 픽쳐레일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바닥마감재_선택2	전실 광폭 강마루	600,000	60,000	60,000	480,000
	주방 상판/벽 마감재	엔지니어드스톤(주방 벽/상판)+상부장 하부 LED 라인조명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팬트리 시스템선반	현관창고+복도 팬트리 : 시스템선반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합 계		25,500,000	2,550,000	2,550,000	20,400,000
304동 605호	시스템에어컨_선택1	거실+주방+침실1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식기세척기	DIB22S(LG전자)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전기쿡탑(인덕션3_블랙)	CIRS-FL301FB-S(쿠쿠)	500,000	50,000	50,000	400,000
	주방 상판/벽 마감재	엔지니어드스톤(주방 벽/상판)+상부장 하부 LED 라인조명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조명패키지	거실조명(우물천장 직간접라인조명 2줄, 아트월 단천장+간접조명)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침실1 드레스룸_선택1	포스트타입 시스템선반+화장대 분리형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팬트리 시스템선반	현관창고+복도 팬트리 : 시스템선반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냉장고장(가전 미포함)_선택2	통합형 냉장고 공간+서랍형 수납장+상부수납장2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욕실1 패키지(공용)	① 욕실벽, 욕조에이프런 : 포세린타일(600*600) ② 수납형 욕조수전 ③ 수전/악세서리 무광 니켈 마감, 비데일체형 양변기 ④ 복합환풍기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욕실1 패키지(부부)	① 욕실벽 : 포세린타일(600*600) ② 샤워부스 흑니켈프레임, 캔버스 샤워수전 ③ 수전/악세서리 무광 니켈 마감, 비데일체형 양변기 ④ 복합환풍기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바닥마감재_선택2	전실 광폭 강마루	600,000	60,000	60,000	480,000
	침실3 붙박이장	측면 거울형 붙박이장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합계		21,700,000	2,170,000	2,170,000	17,360,000
304동 1204호	시스템 에어컨_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주방 상판/벽 마감재	엔지니어드스톤(주방 벽/상판)+상부장 하부 LED 라인조명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합 계		11,200,000	1,120,000	1,120,000	8,960,000
305동 904호	시스템 에어컨_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바닥마감재_선택2	전실 광폭 강마루	600,000	60,000	60,000	480,000
	전기쿡탑(인덕션3_화이트)	CIRS-E301FAW(쿠쿠)	600,000	60,000	60,000	480,000
	주방 상판/벽 마감재	세라믹타일(주방 벽/상판)+상부장 하부 LED 라인조명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팬트리 시스템선반	현관창고+복도 팬트리 : 시스템선반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합계		15,400,000	1,540,000	1,540,000	12,320,000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협은행	1010-2577-9961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지사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1010-2578-0024	
추가 선택 품목 납부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1010-2578-0134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23동 804호 계약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230804홍길동'으로 기재)
- 현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계약금 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해당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해당 세대 동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 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3항 **(출산특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 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d></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유형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td></tr>
</table>

4-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당첨자 선정방법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td><td colspan="2">-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
서비스</td><td>청약홈</td><td>-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14.(수) ~ 2026.10.23.(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td></tr>
<tr><td>문자</td><td>- 제공일시 : 2026.10.1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 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일정	장소
서류 제출	2026.10.16.(금), 1일간, 10:00 ~ 16:00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B동 412호 / 금호건설 수도권영업소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안내

- 모든 제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 및 제출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 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이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및 계약체결 구비서류 안내**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내 제출 /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및 공통서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 용도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O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표기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하여 제출) -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진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본인 또는 자녀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주택가격확인서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O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대리인 신청시	O		위임장	당첨자/대리인	■ 금호건설 수도권영업소 비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O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당첨자 계약 체결**

구분	일시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10.21.(수), 1일간, 10:00 ~ 16:00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B동 412호 / 금호건설 수도권영업소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O		계약금 입금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핸드폰 이체 화면 캡쳐본 ※계약장소에서는 현금 수납 불가.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O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O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전자수입인지 납부 증명서 ※ 아파트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 전자수입인지(e-revenu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사업주체가 부담하여 구매한 75,000원 인지세 종이 문서는 공급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에게 지급 예정**
		O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계약장소에 비치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일치해야함(분양대금+발코니 확장비 합계금액 기준 6억 초과 주택에 한함)
	O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계약장소에 비치
대리인 신청시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O		위임장		■ 계약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모든 서류는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기타 사항

■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4.07.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확인 예정이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2.21.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에 따른 불법행위 재공급 아파트이며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식회사 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베스텍파트너스	주식회사 라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하나종합테크
감리금액	2,983,530,000	577,954,310	795,521,817	154,000,000

※ 감리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임.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상호	금호건설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주)	극동건설(주)	㈜금성백조건설
법인등록번호	110111-0134877	160111-0003121	110111-0027858	160111-0032972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동 615호(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1동 7층 708, 709호(나성동, 르네상스)

■ **분양관련 문의 및 사무실 위치 안내**

- 사무실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B동 412호 / 금호건설 수도권영업소
- 분양문의 : ☎02-303-5741(평일 10:00~16: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arteragy.co.kr